

이크 처리를 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신문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좋은 사진을 촬영해 독자들에게 보여 줄 의무가 있고, 독자는 명확한 사진을 볼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독자들에게 좀 더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사의 책임이므로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작위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언론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 다뤄진 사례는 제가 속한 중재부에서 담당하던 사건으로, 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의 제보자로 경찰조사와 별도로 경찰서에서 기자의 취재에 응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1백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소규모 매체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액에 굉장히 민감하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더 크게 게재하겠으니 손해배상액은 줄여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소규모의 영세한 언론사의 경우 소액일지언정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기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수 결정 과정에는 굉장한 고민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언론 종사자들에게 기사작성 등 전반적인 교육을 깊이 있고 폭넓게 시켜, 기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수히 많은 언론매체가 생겨나 언론인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인의 자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 언론사의 자체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언론계의 이익이 되리라 본다.

사회자 :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위원장님 총평으로 마무리 하겠다.

IV. 위원장 총평

권 성 (위원장) :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사무처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과 일선 기자분들, 포털사 관계자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 또한 국내 굴지의 언론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경륜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신 두 분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오늘 토론회가 더욱 빛났다.

토론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한다. 첫째, 포털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포털을 언론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언론이 무엇인가라는 언론의 정의적, 구성요소적 관점에 따른 방법이다. 언론의 개념을 정의한 후 포털은 이러한 언론의 요소를 결했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접근방법으로, 독일식의 개념법학적 측면이 많다. 또 하나는 현재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영미식 접근방법으로 기존 언론매체와 비교해 현재 포털이 메이저급 언론사 이상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므로 어떻게 언론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포털을 언론에 근접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고, 현재의 사회 흐름상 포털을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이 기사제공언론사와 공동불법행위자라는 관점을 제시했지만 학계와 법원에서 포털이 왜 언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동일성 이론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 생각한다. 현재 신문사와 포털의 관계를 신문사와 중학생의 관계로 비유해 보자. 예를 들어 한 유력 신문사가 어린 중학생을 고용해 신문을 배포시킨다고 할 때, 이 중학생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신문을 배달하는 이 중학생과 포털을 같은 입장이라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자기동일성의 문제라 생각한다. 기사제공 언론사는 자신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포털에게 동일성을 부여한 것이고, 포털은 이를 수용한 것이라 본다.

둘째,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액산정표'를 만들기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점가감표'를 만드는 등 끊임 없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원회가 제시해 온 손해배상액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았다. 과거에는 신청인들의 욕구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인 10~20만원의 적은 금액으로도 막강한 언론사를 상대로 적은 금액이나마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상징성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들은 권리의식이 매우 고양되어 상징적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어떻게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위원회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조금이라도 과하게 하면 언론사로부터 언론의 자유 제한, 언론에 대한 간섭 혹은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

때마다 대단히 곤혹스럽지만 위원회는 전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고양시키고 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의 참석자들께서는 위원회의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위원회가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핍박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목적임을 양해해 달라.

끝으로, 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수가 객관적인 정의 관점에서 볼 때 언론사측에 너무 유리하고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론이나 관련 법률에 문외한인 신청인을 상대로 언론사측에서는 사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힘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중재부의 판단에 맡겨, 중재부가 좀 더 객관적인 정의기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중재절차에 대한 언론사측의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론사는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측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절차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께서 여러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논점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주셨다. 장시간 이어진 토론회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